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10월 3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17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12월 21일

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이 수 영

나. 제안이유

- 정부의 불합리한 지방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상위법 제·개정 미반영 사항을 정비하여 노인, 한부모가족, 독립·국가 유공자,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우선사업 대상자에 노인, 한부모가족, 독립·국가유공자, 북한이탈주민 추가(안 제1조)
-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없는 매점 규모 제한 삭제(안 제2조)
-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우선순위 내용 추가(별표)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2조, 「노인복지법」 제25조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5조,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의2
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3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엽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정부의 불합리한 지방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상위법 제·개정 미반영 사항을 정비하여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의 우선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수정하였고,
- 안 제1조에서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우선 사업 대상 범위를 기존 장애인에서 노인, 한부모가족, 독립·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확대하였고,
- 안 제2조제2항에서 상위법의 근거가 없는 ‘공공기관이 직영하는 경우와 매점의 경우 그 규모가 5㎡를 초과하는 시설을 제외한다’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고,
- 안 별표에서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우선순위 규정을 추가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

「장애인복지법」, 「노인복지법」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,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고 있는 생업지원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장애인, 노인, 한부모가족, 독립·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구미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,
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